# 대전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아이돌보미 채용공고

대전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이돌보미를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.

2022년 12월 01일

## 대전서구가족센터장

### ○ 아이돌보미 신청 및 <del>돌봄활동</del> 절차

▶신청 ⇨ 서류심사 ⇨ 인·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 ⇨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 ⇨ 근로계약 체결 ⇨ 돌봄활동(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)

### 1. 모집분야 및 인원

모집분야	인원	주요직무
아이돌보미 (정시/수시)	30명 내외	-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-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-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과 성범죄 신고의무 등

#### 2. 자격요건

구분	자격기준
기본사항	- 신체 건강하고, 정신상태 양호한자 -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활동희망자 ※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- 대전시 [서구]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- 근로계약 후 즉시 활동 가능자(시간제, 영아종일제 서비스 등) - 컴퓨터(기초)와 인터넷, 스마트폰 앱 사용이 가능한 자
우대사항	- 생후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돌봄 가능자 - 서비스 집중시간대(16:00~21:00)와 주말·야간 돌봄 가능자(자차소지자) - 서비스 대기지역(도안동, 관저동, 내동) 거주자 - 보육교사, 유치원교사, 간호사, 초·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- 아이돌봄 활동이 가능한 경증단계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 - 저소득층,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 등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
## 3. 모집일정 및 제출서류

구분	내용					
	서류접수	서류전형	인·적성검사	면접전형		
	22.12.1.(목)~23.1.3.(화) 14:00까지	23.1.5.(목) 14:00 *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공고	23.1.9.(월) 11:00	23.1.11(수) * 추후 시간안내		
모집일정	면접결과발표	양성교육(80H)	현장실습(4H)	근로계약		
	23.1.13.(금) 11:00 *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공고	23.1.30.(수)~2.14(화) * 비대면 & 대면 병행	23.2.15.(수)~2.21.(화) * 이용자기정	23.3.1.(수) * 서류작성 : 2.23.(목)		
	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형 일정 및 면접 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					
접수방법	-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<mark>홈페이지(https://care.idolbom.go.kr) 접수</mark>					
신청시 제출서류	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(첨부양식) ②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(첨부양식) ③ 이력서, 자기소개서 각 1부 (첨부양식) ④ 주민등록등본 1부 (최근 3개월 이내) 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(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) 1부 ⑥ 경력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 1부 ⑦ 관련 자격증/장애인복지카드 사본 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					
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	①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1부 (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)  ※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, 정신질환,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("정신질환자나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" 이라는 문구 포함) 검사 포함. 미포함 시 추가 검진하여 제출 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2장 (최근 3개월 내)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최근 3개월 내)					

## 4.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안내

구분	내용
양성교육 (80시간)	■ 면접심사를 통과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- 교육방법 : 온라인교육 + 대면교육 - 교 육 비 : (정규 면접심사 통과자) 20만원
현장실습 (4시간)	■ 양성교육 수료 후 현장실습 진행 -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이수
근로계약	■ 근로계약 체결 : 2023년 3월 1일 - 결격사유가 없고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한 지원자 - 근로계약 이후 즉시 활동 가능자

#### 5. 근무조건

구분	내용		
	영아 종일제	-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(건강, 영양, 위생, 교육 등)	
	서비스	-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, 아동발달, 건강, 특이시항 등을 관찰하여 이용자에게 전달	
<u>돌봄활동</u> 범 위	시간제 서비스	- 학교, 보육시설 등·하원 및 준비물 보조,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(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. 단,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) -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-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, 아동발달, 건강, 특이사항 등을 관찰하여 이용자에게 전달	
근로조건	- 돌봄수당(기본시급): 9,630원 ※ 주휴일, 야간·휴일·연장근로,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따른 법정 제수당 지급 ※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라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- 4대보험 가입: 소정근로 주15시간, 월 60시간이상 근로 시 - 퇴직금 지급: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가 1년 이상인 자 - 명절상여금 지급: 활동이 있는 근로계약 유지 아이돌보미 대상		

#### 6. 아이돌보미 결격사유

#### ※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(「아이돌봄지원법」제6조)

- 1. 미성년자 ·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- 2. 정신 질환자
- 3.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6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7. 「아동복지법」 제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 71조 1항의 죄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), 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(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)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의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의3.「아동복지법」제3조 제 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의4.「아동복지법」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8. 제32조의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
- 9.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.

#### 7. 유의사항

구분	내용
유의사항	- 아이돌봄서비스(아이돌보미) 홈페이지(https://care.idolbom.go.kr)에서만 접수 가능함 - 응시원서 제출 시 기재한 자격은 반드시 자격증으로 증명해야 함 (자격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) 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가 미비 할 경우 접수하지 않음 -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-
문 의	T. 042-520-5704 (아이돌봄지원사업팀)

#### 8.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

#### ※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- 1.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류에 의거,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 드림을 안내합니다.
- 2. 채용반환 대상이 되는 서류(신청서, 자기소개서, 관련자격증 사본 등)는 채용 시 지원자가 서면 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.
- 3. 청구방법은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(반환청구서)을 갖추어 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4.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,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.
- 5. 서류반환 시 비용은 구직자의 부담으로 하며, 구직자는 센터가 지정하는 계좌에 비용을 입금하여 센터가 발송하거나, 수취인 부담으로 센터가 발송합니다.
- 6.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.
- 7. 제1항~제6항에도 불구하고,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